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19주제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I . 트랜스젠더의 인권 - 개념

태어나면서 유전학적으로 결정된 성별과
반대의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성정체성의 문제

자신이 특정한 성별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인식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성별을 의미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와의 구별

성전환수술의 문제

자신의 성정체성과 반대인 신체성징(예: 성기, 생식기, 성선)을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신체의 성징으로 전환

II. 트랜스젠더의 인권 - 문제되는 사안들

1. 이름 변경의 문제

자신의 성정체성에 상응하는 이름의 선택 및 변경의 권리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변경의 문제

자신의 성정체성에 상응하는 성별을 법적 성별로 선택

3. 혼인의 문제

헌법상 보장된 혼인할 권리

4. 차별의 문제

고용(직장)과 교육(학교)의 영역에서의 차별, 괴롭힘

5. 그 밖의 문제들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 호르몬치료나 수술 비용의 지원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괴롭힘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III. 트랜스젠더의 인권 - 한국의 법제도

대법원 판례 (2006. 6.22. 2004스4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허가

이름의 변경

2006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전환자의 개명을 허가

트랜스젠더의 경우 개명의 가능성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 가족등록예규 제307호 - 제2조).

III. 트랜스젠더의 인권 - 한국의 법제도

성별의 변경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2013.7.1.시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5호, 2013.6.7.개정)

성별변경의 허가를 위한 조사사항

- ① 대한민국 국적자, 만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을 것
- ②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
- ③ 정신과적 치료,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수술
- ④ 생식능력을 상실,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음
- ⑤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 없음

※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 신청인의 병역의무 이행·면제”, “기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의 허가요건은 2009년 개정에서 삭제

III. 트랜스젠더의 인권 - 한국의 법제도

혼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성별변경을 인정받은 경우 가능
성별변경의 법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

차별의 경우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정체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III. 트랜스젠더의 인권 - 한국의 법제도

성폭력의 경우

성별정정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의 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기각 - 대판 1996.6.11. 96도791)

(인용 - 대판 2009.9.10. 2009도3580)

특히 교정시설(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나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에 포함된 트랜스젠더의 문제

I. 동성애자의 인권 - 혼인할 권리

전통적인 혼인의 개념 - 이성간의 결합

동성간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3년), 스페인(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미국(매사추세츠주, 아이오와주 등)

동반자관계(partnership)나 시민결합(civil union)

덴마크(1989년), 노르웨이(1993년), 스웨덴(1994년),
벨기에(1998년), 네덜란드(1998년), 프랑스(1999년),
핀란드(2001년), 독일(2001년), 영국(2004년), 스위스(2004년),
뉴질랜드(2004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미국(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뉴저지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워싱턴D.C. 등)

II. 동성애자의 인권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혼인과 동성간의 결합을 구별할 것인가?

혼인에 대한 종교적, 전통적 관점

혼인의 사회적 기능(공동의 출산과 양육)

정서적 유대감, 상호배려, 헌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략)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고용, 교육, 거래 등)를 말한다.

III. 동성애자의 인권 - 비범죄화

사형(사우디,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 종신형(파키스탄 등)
경범죄(미국 텍사스주 등의 sodomy법-동성 간의 성행위 처벌법
: 2003년 대법원의 위헌결정)

한국의 법제도

원칙적으로 동성애는 비범죄
군형법상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은 범죄행위

【군형법】 (2013.6.19.시행, 법률 제11734호, 2013.4.5.일부개정)
제92조의6 (추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기존에 사용되던 “계간(鷄姦)” 에 대해 동성 간의 성행위
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하여 “항문성교” 로 개정

토론

1. 성별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 혼인의 개념에서 이성간의 결합은 본질적 요소인가?
3. 성소수자에 대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